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유 료 도 로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법」 제77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제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재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통행료 감면 제외” 제도의 근거가 「유료도로법」에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제8조의2(통행료 감면 제외) ① -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		----- 법 제15조제2항		
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		
법」 제39조제1항·제4항을 위		-----		
반하여 「도로법」 제117조 또		-----		
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		
호 및 같은 법 제162조부터 제1		-----		
64조까지, 제164조의2 및 제165		-----		
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벌금		-----		
· 구류·과료 또는 범칙금(이하		-----		
“과태료등”이라 한다)을 부과받		-----		
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운		-----		
행하는 차량(위반행위 당시에		-----		
운행한 차량에 한정한다)에 대		-----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기간 동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83